

1984年度 輸出有功者 포상요령

商工部로부터 '84年度 輸出有功者 褒賞要領을 다음과 같이 公告하였기 이를 알리니 우리 會員社에서 多數 褒賞될 수 있도록 措置하기 바라며 同 要領中 本會 및 生産主務局長이 推薦하는 「對韓輸入有功者」 및 「新規商品輸出」 部門에 대하여는 84年 9月 15日까지 本會에 제출하여 주기 바라며 同期日 經過時에는 對象者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니 착오없기 바란다.

다 음

상공부공고 제 84-35호

1984년도 수출유공자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公 고한다.

1984년 7월 12일

상 공 부 장 관

1984년도 수출유공자 포상요령

1. 1984년도 수출유공자 포상의 기본방향

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수출무드를 진작함으로써 수출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포상을 확대함.

나. 종합무역상사 등 대기업의 외형위주의 지나친 수출경쟁을 지양하기 위하여 이들 기업의 다액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수출의 탐은 수여하지 아니함.

다. 수출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율, 신규상품 수출, 신규시장 개척, 자기 상표 개발, 품질향상 및 기타 수출촉진활동과 수출실적, 수출신장률을 종합평가하여 포상함.

라. 수출 일선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수출개척의 무드를 지속하기 위하여 수출기업의 근로자, 기술자 및 해외시장 개척요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함.

마. 수출지원기관의 총화적 협조와 조정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수출절차 개선유공자 및 지원 모범사례자 등을 발굴 포상함.

2. 포상의 종류

가. 수출의 탐

1 백만불탐, 2 백만불탐, 5 백만불탐, 1 천만불 탐, 2 천만불탐, 5 천만불탐, 1 억불탐

나. 서 훈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 창, 상공부장관표창

3. 수출실적 인정기간

가. 당해년도: '83. 7. 1 - '84. 6. 30

나. 전 년 도: '82. 7. 1 - '83. 6. 30

4. 수출실적 인정범위 등

가. 수출실적 인정대상 및 범위, 인정금액, 인정 시점은 무역관리규정 제 6장 제 2절 (수출실적) 의 규정에 의한다.

나. 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의 장이 확인, 증명하여야 하는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 회의 전자계산조직에 의하고 기타의 수출실적 의 경우에는 포상신청자가 거래 외국환 은행장 의 실적증명을 받아 이를 주거래 외국환은행장 이 합산하여 확인한 금액(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한 것에 한한다)에 한한다.

5.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율은 「수출금융규정」에 의하여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사정한 '84년 8월말 현재의 업체별 평균가득율에 의한다. 다만, 업체별 평균가 득율이 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수출금융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사정하는 평균가득율에 의한다.

6. 포상신청 자격요건

포상신청 및 추천대상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 와 같다. 다만, 금융단협정 514 「금융기관의 불 량거래처에 대한 정보교환 및 제재협정」에 의하 여 적색거래업체로 구분조치된 업체(자)는 신청 및 추천대상에서 제외된다.

가. 수출업체

(1) 수출의 탐

당해년도에 처음으로 1 백만불, 2 백만불, 5 백만불, 1 천만불, 2 천만불, 5천만불 및 1 억불 단위의 수출실적을 처음으로 기록한 업체 중 당해년도의 수출신장률이 우리나라 전체평균 수출신장률(22%) 이상인 업체.다 만, 1 백만불, 2 백만불, 5 백만불 수출의 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제조업체(이하 “중소 제조업체”라 한다)에 한한다.

(2) 서훈

당해년도의 수출실적이 1천만불 이상(중소 제조업체는 1백만불 이상)이며 당해년도 수출신장률이 우리나라 전체의 평균 수출신장률(22%) 이상인 업체에 한하며, 신청업체의 부가가치율, 특허품 수출, 신규상품 수출, 시장개척 수출, 우수상표 개발수출, 우수품질 제품수출 및 기타 수출촉진 활동실적과 수출실적 및 수출신장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가) 부가가치율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확인한다.

(나) 특허품 수출

특허품을 개발하여 수출한 업체로서 특허청장이 추천한 업체(10개업체 이내 추천)

(다) 신규상품수출

자체기술개발, 기술도입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으로 신규상품을 수출한 업체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상공부의 각 생산주무국장이 추천한 업체(단순한 모델 및 규격의 변경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각 10개업체 이내 추천)

(라) 시장개척에 의한 수출

미개척시장(특수지역을 포함한다)을 개척한 업체 또는 심한 무역 역조국에 대한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한 업체로서 대한무역진흥공사 사장이 추천한 업체(20개 업체 이내 추천)

(마) 우수상표 개발 수출

우리 고유의 상표를 개발 수출하여 해외시장에서 한국의 국위를 선양한 업체로서 품목별 수출단체가 추천한 업체(각 2개 업체 이내 추천)

(바) 우수품질제품 수출

자체 품질향상 노력으로 수출품의 품질을 현저히 개선한 업체로서 공업진흥청장이 추천한 업체(20개 업체 이내 추천)

나. 수출업체 종업원

포상신청업체 및 종합무역상사 소속의 기술자, 기능사원 또는 해외시장 개척요원으로서 수출의 질적개선과 수출증대에 공이 크다고 그 소속업체의 장이 추천한 자(업체당 1인 이내, 다만, 수출실적이 5천만불이상 1억불 미만 업

체는 2인 이내, 1억불이상 10억불미만 업체는 3인 이내, 10억불이상 업체는 5인 이내 추천)

다. 기타 수출유공자

(1) 대한 수입유공자

한국상품을 많이 수입한 자로서 관련협회 또는 조합의 장이 추천한 자(각 1인 이내 추천) 또는 한국상품의 수출알선을 많이 한 자로서 한국무역대리점협회 또는 한국수출물품구매업자협회의 장이 추천한 자(각 3인 이내 추천)

(2) 해외교포 무역인

한국상품수출에 기여한 해외교포 무역인으로서 외무부장관이 추천훈격을 정하여 추천한 자(10인 이내 추천)

(3) 수출유관기관 임직원(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수출지원에 공이 있는 수출유관기관 임직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이 추천한 자(각 1인 이내, 한국무역협회 3인 이내 대한무역진흥공사 5인 이내 추천)

(4) 수출절차 간소화 유공자

수출절차간소화 작업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의 장이 추천한 자(3인 이내 추천)

(5) 민간통상교섭 유공자

민간통상교섭 활동에 공이 있는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의 장이 추천한 자(3인 이내 추천)

7. 포상신청 및 추천절차

가. 포상신청기간

'84년 9월15일(토)~9월 29일(토)

나. 포상신청 절차

(1) 수출업체 및 수출업체 종업원

(가) 전기 제 6 항 「가」호 및 「나」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한 수출유공자 포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무역협회(회원사업부)에 포상신청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1) 공적조서 각 4 통(별지 제 2 호 서식)
- 2) 수출실적 및 부가가치율 증명서 1 통(별지 제 3 호 서식)
- 3) 추천서 각 1 통(별지 제 4 호 서식에 의하

공지사항

되 전기 제 6 항 「가」의 「(2)」(서훈) 중 「(나)」 내지 「(㉠)」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 4) 추천부문의 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 통.
 -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의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제조업체임을 확인하는 증명서 1 통(별지 제 5 호 서식), 비조합원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통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근로소득 계급별 소득세액 징수명세서 또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1 통(6 월말 현재 기준).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의 업종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최근 결산년도의 대차대조표 1 통.
- (나) 전기 「(가)」의 「(3)」호의 추천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부문의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 통과 기타 추천기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84년 9 월 20일까지 추천 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2) 기타 수출유공자

전기 제 6 항 「다」호의 「기타 수출유공자」를 추천하는 기관은 별지 제 6 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추천순위 명기)에 별지 제 2 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 각 4 통을 첨부하여 포상 신청기간내에 상공부(수출진흥과)에 추천하여야 한다.

8. 포상에 대한 심사

가. 수출의 탐

상공부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나. 서 훈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심사한다.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외연수 안내

사절단, 세미나, 심포지엄, 연구과제, 상담, 합

작투자 등을 통하여 외국과 기술정보교환 촉진 업무를 전담하는 일본 동경 소재 TTI(Technology Transfer Institute)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연수 과정을 개설하니 관심있는 업체에서는 적극 참가하기 바란다.

다 음

1. 연수과정 명칭 : 「International Study Mission to Japan」
2. 주요 연수분야
 - 가. Quality Control
 - 나. Computer Graphics
 - 다.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FMS)
 - 라. Distribution Systems
 - 마. Personnel Management
 - 바. Fermentation Technology
3. 연수분야 및 기간
 - 가. Advanced Physical Distribution System : 84. 10. 13~10. 21
 - 나.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and Industrial Robots : 84. 11. 10~11. 18
 - 다. Personnel Management in Japan : 84. 11. 10~11. 18
4. 국내 문의 및 연락처

TTI of Korea
Mr. Lim
Tel : 782-0685. 8231.

不法 電氣用品 識別 방법

1. 다음 表示가 없는 品目은 不法 電氣用品이다.
 - 1) 型式承認番號(例; ㉠ 1-7-14)
 - 2) 製造者名(例: 영등포工業社)
 - 3) 定格電壓(例: 100V, 220V, 100V/220V 등)
 - 4) 定格消費電力(例: 100W, 200W 또는 250W 등)
 - 5) 定格電流(例: 5A, 10A 또는 15A 등)
 - 6) 製造年月(例: 1980. 2)
 - 7) 使用上의 주의사항
 - 8) 事後 봉사할 주소 또는 전화번호
2. 團東 要領
 - 1) 電氣用品 安全管理法 第 4 條 및 同法 第 9 條

의 規定에 의한 製造許可 및 型式承認을 받지 아니하고 電氣用品을 製造하거나 進열 판매하는 행위(輸入品 포함)

- 2) 同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承認表示 위반행위
- 3) 同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承認表示가 없는 電氣用品을 판매하거나 進열하는 행위
- 4) 同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承認表示가 없는 電氣用品을 사용한 電氣事業者, 電氣工作物設置者 또는 電氣工事事業者와 製造業者
- 5) 기타 型式承認이 취소된 電氣用品을 製造 또는 進열, 판매하는 행위

3. 法的 處罰規定

1) 電氣用品 安全管理法 第32條(罰則)

•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2年 以下의 징역 또는 1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① 法 第4條1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받

지 아니하고 電氣用品의 製造業을 한 者

- ② 法 第9條1項 또는 3項의 規定에 依한 承認을 받지 아니하고 電氣用品을 製造하거나 販賣한 者

2) 電氣用品 安全管理法 第33條(同前)

•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① 法 第9條1項, 3項 但書의 規定에 依한 承認을 받지 아니하고 電氣用品을 製造하거나 販賣한 者
- ② 法 第12條, 14條, 15條의 1項 또는 3項의 規定을 違反한 者
- ③ 法 第23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破棄 또는 收去하지 않는 者
- ④ 法 第24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改善하지 않는 者

用語解説

■ 衛星 通信

遠距離通信을 중계하는 통신전용의 위성이다. CS (Communication Satellite 라고 불린다. 日本에서는 금년 2月 4日 쏘아 올리는데 成功한 CS-2a 사쿠라2號a)는 最初의 실용위성통신이다. 8月에는 豫備機 CS-2b를 發射할 豫定이다. 통신위성은 상시전파를 중계하기 위하여 赤道 上空 3萬6,000킬로미터에 静止 衛星軌道에 위치한다. 현재 국내용 실용통신위성 보유국은 美國, 캐나다, 日本, 인도네시아, 소련의 5個國이 있다. 國際間 通信은 인텔사트(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船舶의 해상通信用으로는 인말서트(국제해사위성기구)가 각기 위성통신 서비스를 함으로서 兩機構에 各各 加盟하고 있다.

■ 電子 郵便

電氣通信으로서 팩시밀리와 郵便의 배달을 합친 것으로 自筆의 文章과 인라스트, 圖面 등을 그대로 相對方에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即日 配達이 原則이다. 日本의 경우 81年 7月부터 실험에 들어가 現在 東京, 大阪, 名古屋 등의 5個 都市14個 주변國에서 취급 중이다. 81年度의 利用數는 5萬 2,760通에 달한다. 世界的으로는 70년에 美國에서 텔레타이프용 電子郵便 메일그램 서비스가 시작된 것이 最初이다. 81년에 취급숫자 4千百萬通에 이르고 있다. 英, 西獨, 프랑스, 캐나다, 스웨덴에서도 試行中에 있다. 또한 어떤 부문은 實用化 되고 있다. 各國間에서는 國際電子郵便(인텔포스트) 서비스도 실시되고 있다.